

보도자료
2018. 05. 09[수]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사당 511호, 전화: 02-784-3255, 팩스: 02-788-0270, 문의: 김성열 비서관
홈페이지: <http://www.yajeong.or.kr>, 트위터: @ya_jeong, 페이스북: /yajeong

거대 포털의 여론조작, 이제는 법이 나서야 할 때

- 기사는 아웃링크로만 제공, 배열 시 ‘김영란법’ 위반 밝혀지면 등록취소까지 가능토록 하는 강도 높은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 발의
- 유 위원장 “포털은 이미 자정능력 상실한지 오래, 법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 9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거대 포털의 자의적 기사 배열과 편집,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을 막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가 직접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기사의 제목 등만 공개한 채, 해당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매개만 해주는 ‘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토록 하여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사배열 시에도 책임자가 부정한 청탁 등을 받고 임의로 기사를 배열할 수 없도록 했고, 위반 시 해당 인터넷뉴스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뉴스 소비 구조와 언론 생태계에 미치는 유명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부정청탁을 받고 기사를 재배열한 임원을 직위해제하고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의 심각성 역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하여 포털은 자구책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률로써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 왔다.
-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 먼저 포털의 뉴스공급방식을 기존 인링크 방식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댓글에 의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기사배열 등과 관련하여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어 부정청탁에 의한 기사 재배열 행위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위원장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져 왔지만, 그에 맞는 책임은 방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아웃링크 방식을 법제화하고, 부정 청탁 등으로 기사배열 조작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거대 포털 견제와 함께 건강한 담론시장의 회복을 꾀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덧붙였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경진, 김광수, 김종희, 안상수, 이동섭,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황주홍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8. 5. .

발 의 자 : 유성엽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방식은 사이트 내 뉴스 클릭 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인 ‘인링크’ 방식임. 일명 가두리 방식으로 댓글 조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특히 선거와 관련된 댓글 조작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있음.

또한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가 특정 업체 유착 정황이 나오는 등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 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강력한 만큼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링크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도입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본문 중 “제공하거나 매개하는”을 “매개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본방침과”를 “기본방침의 구체적 내용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언론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을 “매개하는 기사에 대하여 그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로, “.내용 등을”을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공 또는 매개하는”을 “매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공 또는 매개하는”을 “매개하는”으로, “.내용 등의”를 “등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저작권법」을”을 각각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한 경우로서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

중 연결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② ----- 매개하는 기사에 대하여 그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등을-----.

③ ----- 매개하는-----.

④ ----- 매개하는-----등의-----.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

-----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3. -----

-----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한 경우로서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③·④ (생략)

<신설>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8. 5. .

발 의 자 : 유성엽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 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있음.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가 특정 업체 유착 정황이 나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 형평성을 높이고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마. 제1호바목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대표와 그 기사배열책임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마. (생략)</p> <p><신설></p> <p>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략)</p> <p><신설></p> <p>3.·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마.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바. 「<u>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6호에 따른 <u>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u></p> <p>2.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마. 제1호바목에 따른 인터넷 <u>뉴스서비스사의 대표와 그 기사배열책임자</u></p> <p>3.·4. (현행과 같음)</p>